

#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6.1		16		
2	2017.3.1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입학공정관리위원회 규정

**제1조** 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학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**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개정 2017.3.1>

**제3조**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
3. 대학입학전형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
4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
5. 최종합격자 성적사정 등 선발 관련 사항<신설 2017.3.1>
6. 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와 관련된 사항

[중전 5호에서 6호로 변경 <2017.3.1>]

**제4조** 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** 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** 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